2021년도 제2차

금융통화위원회(정기) 의사록

한 국 은 행

1. 일 자 2021년 1월 28일(목)

2.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

3.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(총재)

고 승 범 위 원

임지원 위원

조 윤 제 위 원

서 영 경 위 원

주 상 영 위 원

이 승 헌 위 원(부총재)

4. 결석위원 없 음

5.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유 상 대 부총재보

정 규 일 부총재보 박 종 석 부총재보

이 환 석 부총재보 배 준 석 부총재보

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

민 좌 홍 금융안정국장 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

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김 현 기 국제국장

신 운 경제연구원장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

성 광 진 의사팀장

6. 회의경과

가. 의결안건

## <의안 제4호 — 「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」 개정(안)>

(1) 담당 부총재보가 외화예금지급준비금 부족 과태금 부과처분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 판결내용을 반영하기 위해「한국은행법」제28조 제2호 및 제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「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」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.

## (2) 위원 토의내용

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1월 21일 위원협의회에서 논 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.

일부 위원들은 이번 판결로 외화예금 지급준비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 진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, 거주자의 해외투자 및 외화예금 규모가 늘어 나는 여건 등을 감안하여 외화지준 제도의 유용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음.

이에 다른 일부 위원은 예금인출 리스크 등에 대비한 외화지준 제도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.

## (3) 심의결과

원안대로 가결

의결사항

「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<붙임>「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」개정(안)(생략)